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2019-189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인천□□중학교장
재 결 일 자 2020. 2. 17.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피해학생 ●●●, 피해
학생 ◎◎◎은 인천□□중학교 학생이다.
- 나. 청구인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2019. 11.
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라고 한다)가 개최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2. 청구인에게 피해
학생 ●●●와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3일, 6시간, 학생 및 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처분하고, 피해학생 ○○○과 관련하여서는 서면사과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2.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가. 자치위원회는 청구인에게 가해행동에 대한 질의로 일관하고, 피해 사실 확인이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에 청구인을 출석시켜 청구인에 대한 조치를 이미 결정한 후 확인하는 것처럼 진행하였다. 사건개요 설명 시 청구인이 하지 않은 내용(부모패드립, 정신병자라고 했다 등)을 보고하고, ○○○ 학생과 관련하여 상급학생을 통한 위협 및 협박을 받은 사실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별건 사항이라며 무시하였다.

나. 자치위원회 위원인 교감은 청구인에 대해 고압적으로 말하고 상대학생에 대해 옹호하면서 청구인을 혼계하였다. 자치위원회는 청구인이 ●●● 학생에게 사과하였음에도 ●●● 학생이 이를 무시하고 가버린 일에 대해서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청구인에 대해서만 화해, 사과할 마음이 없거나 반성할 기미가 없는 것처럼 추궁했다.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학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화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학교를 통해서 상대학생 보호자와의 화해 및 사과 조건에 들은 바가 없는데, 처분 수위가 높게 나온 것은 청구인이 상대학생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으니 반성하라는 취지의 결과로 보인다.

다. 2019-11호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급 내에서 영향력 있는 부반장인 ●●● 학생에게 1학기 초부터 ○○◇◇라는 놀림과 그와 관련된 조롱, 비웃음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 청구인이 ●●● 학생에 대해 개사하여 노래를 부른 것은 2학기이므로 ●●● 학생이 먼저 놀림을 시작하였다. ##, ♠ ♠ 등은 학급 내에서 학생들이 서로에게 엉뚱하거나 답답한 행동을 했을 때 상대에게 그러지 말라는 취지에서 통상 쓰는 언어이고, 다른 학생들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도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 학생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사과하지 않았다며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해서만 차별적, 특정적으로 처벌을 원하였다. 담임교사에게 확인한바 ●●● 학생은 언어폭력으로 인한 사과나 면담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 학생의 틱증상이 심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청구인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치다. 청구인도 ●●● 학생에게 틱증상이 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다.

라. 2019-12호 사안에 대하여

☆☆라는 표현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 학생을 그렇게 부르기에 청구인은 뜻도 모르고 따라 사용한 것이고 성적인 별명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오히려 ○○○ 학생이 청구인에게 같은 반 여학생들 앞에서 빈번하게 “○○○ ★★로 만든 ★★◇◇”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놀려 성적인 수치감을 주었다. 피청구인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 학생이 3학년 선배를 사주한 것에 대해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학교 내 위협에 대해 정식으로 교사를 통해 접수하였음에도 청구인만 과중한 처벌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이후 상급생이 갑작스럽게 청구인에게 사과하였는바, 청구 사실이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학교 측에서는 청구인의 피해사실에 대

해 조사하지 않고 묵살하였다. 청구인이 피해학생인 2019-15 사안 상급생 협박 사주사건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분은 청구인이 받은 처분에 비하면 경미하다.

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학생들의 부모가 같은 반 다른 학생 부모들에게 청구인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집단따돌림이 발생하였고, 쌍방 학교폭력 접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접수는 무시되고 청구인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처분이 내려졌다. 청구인이 화해나 사과의사를 충분히 밝혔고 쌍방 언어폭력임에도 과중한 처분이 내려져 억울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을 위한 보호조치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제껏 보건 및 상담교사와의 접촉은 없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 즉시 보건교사와 상담교사가 청구인, 상대학생들의 육체적, 심리적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전담기구에 해당 확인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전담기구에서도 긴급 보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청구인, 상대학생들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였다. 자치위원회의 진술 순서는 별도의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상대학생들과 공통으로 연관된 학생이기에 사안의 심층적인 파악 및 종합적인 진위 여부를 위해 마지막 순서로 자치위원회에

청구인을 출석시킨 것이다. 청구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부모패드 립, 정신병자라고 했다 등)에 대해 상대학생들이 상반된 입장을 진술하였기에 해당 내용을 양측으로부터 확인하고자 자치위원회에서 사안 개요를 설명한 것이고,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처분 조치 결정 시 고려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상반되기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진위여부를 조사하였다. 피청구인은 당시 업무로 인해 불참한 학교경찰관과 상관없이 청구인의 상급학생으로부터의 위협, 협박을 조사할 수 있고,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상담 및 전담기구에서의 청구인의 사전 진술을 토대로 ○○○○ 학생 및 상급학생을 조사하였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치위원회에서 ○○○○ 학생에게 질문하였고 ○○○○ 학생이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여 다음 차례였던 청구인에 대해서는 사안개요 설명 시 이를 제외한 것인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자치위원회의 교원위원인 교감은 이전 상대학생들이 진술한 내용 중 의문이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하고자 질의하였고, ○○○○ 학생의 신체적인 특성 및 ●●● 학생의 틱, 자살충동 및 스트레스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질의하였으며, 자치위원회의 취지에 따라 계도와 개선을 위한 훈화차원의 질의를 하였다. 청구인이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에 ●●● 학생이 화해를 거부한 점은 담임교사와의 면담 및 자치위원회에서의 진술로 확인되었다. 청구인과 상대 학생들 간의 상호 사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과의 진위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치위원회에서는 다른 상대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사과와 관련한 질문을 하였다.

다. 2019-11호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에서는 ●●● 학생이 청구인에게 △△(노래 개사 중, 나

오는 놀림용어)라고 놀림을 당한 이후 청구인에게 ○○◇◇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한 ●●● 학생의 언어폭력과 ●●● 학생이 인정한 진술이 일치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 학생의 진술만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이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과 ●●● 학생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숙의하여 이 사건 처분 조치를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견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 ○○◇◇ 등 양측이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 처분 원인에 반영하였다. 청구인이 ●●● 학생에게 사용한 비속어(♠♠, ♠♠ 등)는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바, 학생들 간에 쓰일 수 있는 통상적인 언어가 될 수 없다. ●●● 학생은 자치위원회에서 여러 학생들 중 청구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데다가 언어폭력이 심각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자치위원회는 관련 학생들의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 학생이 제출한 정신과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주체적으로 이 사건과의 개연성을 판단하였다.

라. 2019-12호 사안에 대하여

교원위원이 청구인에게 ‘☆☆’ 라는 표현에 대해 설명한 것은 앞서 상대학생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청구인으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9. 12. 27. ◎◎◎ 학생이 상급학생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신고하여 2019-15 사안으로 진행되었는데, 청구인은 “상급생이 무서워서 사실 과거 조사과정에서 상급생이 누군지 모른다.” 라고 진술하였고, ◎◎◎ 학생 또한 “상급생에게 사주한 기억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청구인이 누구로부터 청구인이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주장이다. 2019-15 사안의 가해학생들의 진술서를 보면, 학교 측에서 상급학생들에게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의도적으로 위 사안을 누락시켜 청구인 측을 불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이 사건 위원회 자료, 행정 심판 자료들에 대한 고의적인 유출은 없었다.

마. 상대학생 측에서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 유지를 통해 2차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있고 있다. 청구인의 학교폭력 접수를 악의적으로 묵살한 적이 없고, 2019-11호, 2019-12호 사안으로 접수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6-99호)에 제시된 부가적 판단요소 조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초기 판정된 4호(사회봉사) 조치에서 나이, 선도가능성, 처벌정도 등을 고려하여 3호(교내봉사) 조치로 경감하였다. 청구인과 상대학생 측의 보호자와의 화해 및 사과 조건에 관해 괴리가 있어 학교장 자체 해결이 어려웠고, 전담기구 보고시점까지 해결되지 않아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청구인의 정신적 충격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를 하였고, 학년 진급 시 이 사안을 고려하여 학급 편성할 예정이다. 보건 및 상담교사는 청구인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조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청구인은 보건 및 상담교사와의 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나, 보건 및 상담교사와 면담 및 특이사항을 상의하여 학교폭력전담 기구에 보고된 상태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 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노래를 ‘@@’와 같은 비속어가 포함된 노래로 개사하여 부르고, ●●● 학생을 ##이라고 놀렸으며, ●●● 학생에게 ♠♠, ♠♠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 학생도 청구인에게 ○○◇◇라고 말하였다.
- 나. 청구인은 ○○○ 학생에게 ♣♣, ☆☆(○○○ 학생의 신체적 특이점을 빗대어 말한 성적인 별명)라고 놀렸고, ○○○ 학생도 청구인의 별명인 ◇◇, ★★◇◇라고 놀렸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

1) 관련법규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 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의 점

청구인은 ●●● 학생을 상대로 개사하여 노래를 부른 사실 및 # #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 ♣♣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이라는 단어는 학생들 간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 학생에게 ♠♠, ♣♣이라고 말한 사실은 ●●● 학생의 주장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작성한 2019. 10. 25.자 사실확인서, 2019. 10. 28.자 사실확인서, 2019. 11. 1.자 사실확인서에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의 부모는 위 사실확인서 모두 담임선생님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세 번의 사실확인서는 모두 다르게 작성되었고,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담임선생님의 강요나 주입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담임선생님의 강요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청구인이 스스로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 학생을 ♠♠, ♣♣이라고 놀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라는 말의 의미는, 북유럽 신화 속 심술쟁이 괴물을 지칭하는 말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를 놀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해 상대학생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따라서 ##이라는 단어를 다른 학생들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통상적으로 학생들 간에 사용될 수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노래를 개사하여 부르는 방법으로 ●●● 학생을 놀린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가장 주도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학교폭력 신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행위로서 언어폭력에 해당하되,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3)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점

청구인은 ○○○ 학생을 ㅎㅎ, ☆☆라고 부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의 인정 진술 외에도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 학생을 놀려 괴롭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학생에게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학교

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1) 관련법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안검토

자치위원회에서는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보통(2점), 고의성 보통(2점), 반성정도 높음(1점), 화해정도 보통(2점)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총점 9점으로 사회봉사 조치에 해당하는 점수이나, 화해가능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을 고려

하여 교내봉사로 경감 조치하였다. 청구인은 사과 및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반성정도를 높다고 판단하였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화해정도를 보통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화해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오히려 경감조치 하였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선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치위원회에서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의 점에 대해서는, 심각성 보통(2점), 지속성 낮음(1점), 고의성 낮음(1점), 반성정도 높음(1점), 화해정도 높음(1점)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총점 6점으로 교내봉사 조치에 해당하는 점수이나 화해가능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면사과로 경감 조치하였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선도와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함이 없다.

다. 결론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

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